

시 민

문서번호	기술심사담당관-12090
결재일자	2013.7.18.
공개여부	대시민공개
방침번호	

주무관	심사총괄팀장	기술심사담당관	행정2부시장
정회평	김길남	최진선	07/18 문승국
협 조			

함께 만드는 서울, 함께 누리는 서울

**「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」**

**의원별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**



2013. 7.

**서울특별시**  
(기술심사담당관)

## 사건 검토항목

∴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'무 ■' 표시하시기 바랍니다.

검토항목	검 토 여 부 (■ 표시)
시 민 참 여 고 려 사 항	● 시 민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 ) 무 ■
	● 이 해 당 사 자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 ) 무 ■
	● 전 문 가 : 유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( ) 무 <input type="checkbox"/>
	● 음 브 즈 만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 ) 무 ■
법 령 및 기 타 고 려 사 항	● 법 령 규 정 : 교통 <input type="checkbox"/> 환경 <input type="checkbox"/> 재해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( 건설기술관리법 ) 무 <input type="checkbox"/>
	● 기 타 사 항 : 고용효과 <input type="checkbox"/> 노동인자 <input type="checkbox"/> 균형인지 <input type="checkbox"/> 홍보 <input type="checkbox"/> 취약계층 <input type="checkbox"/> 성인지 <input type="checkbox"/> 장애인 <input type="checkbox"/> 디자인 <input type="checkbox"/> 갈등발생 가능성 <input type="checkbox"/> 유지관리 비용 <input type="checkbox"/> 무 ■
타 자 원 의 활 용	● 중 앙 부 처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 ) 무 ■
	● 민 간 단 체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 ) 무 ■
	● 기 업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 ) 무 ■
관 계 기 관 및 단 체 협 의	● 관 계 기 관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 ) 무 ■
	● 민 간 단 체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 ) 무 ■
	● 시 산 하 기 관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 ) 무 ■

# 「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」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

박태규의원 외 13명으로 발의되고 시의회 제247회 정례회에서 수정 의결되어 이송된 「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일부개정안」에 대한 검토 보고임

## I 조례 개정 경위

- 2013. 4. 30 : 의원 발의 (박태규의원 외 13명)
  - 총공사비 100억원 미만은 설계변경 대상에도 들지 않아, 부적절한 설계변경을 양산하는 원인이 되고 있는바,
  - 설계변경 계획단계에서 심의를 거치도록 하므로써 불필요한 예산낭비 차단
    - ※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설계변경 심의대상 : “총공사비 100억원으로 기본적인 계획 또는 공법이 변경되는 공사” (「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」 및 동조례)
- 2013. 7. 3 : 제247회 정례회 건설위원회 수정가결
- 2013. 7. 12 : 제247회 정례회 본회의 수정의결

## II 개정안(원안)

- 건설공사의 설계변경에서 투자심사 재심사 대상을 제외하고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 설계변경 사유 및 기본계획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 추가(안 제3조제1항제7호 신설)
  - 총공사비 20억원~100억원 미만공사 : 1회 설계변경 증액분이 해당 계약금액의 10% 이상 또는 5억원 이상 인 경우
  -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공사 : 1회 설계변경 증액분이 해당계약금액의 5% 이상 또는 10억원이상인 경우
  - ※ 투자심사 재심사 대상 : 투자심사후 사업비가 30%이상 증액된 사업(투자심사 규칙 제6조)

### Ⅲ 수정 의결안

#### □ 수정 의결 사유 : 우리시 수정 요청 사항 반영

- 심의의 실효성 확보와 발주부서와 심의기관(기술심사담당관)의 업무량 증가 등을 고려하여 **총공사비 50억원 이상, 1회 설계변경 증액분이 5억원 이상(10%)인 경우**로 심의대상 수정 요구
  - 최근 3년간 우리시 설계변경 대상공사를 조사한 바, 소형공사의 경우 단순 설계변경이 대부분(80%)으로 기본계획 변경 또는 공법의 적정 여부에 대한 심의의 실익이 적음
  - 발주기관 및 심의기관(기술심사담당관)의 업무량을 고려한 심의건수 조정 필요
    - 의원발의안 : 90건(평균 2.5건/월) ⇒ 수정안 : 32건(평균 1.0건/월)
    - ※ 기술심사담당관 심의업무량('12~'10년) : 년평균 1,121건(20건/주)

#### □ 수정 의결안

의원 발의안	시의회 수정 의결안
<p>서울특별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제7호(신설)</p> <p>7. 건설공사의 설계변경에서 투자심사 재심사 대상을 제외하고 <u>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 설계변경 사유 및 기본계획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</u></p> <p>가. 2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공사: 1회 설계변경 증액분이 해당 계약금액의 10% 이상 또는 5억원 이상인 경우</p> <p>나. 100억원 이상 공사: 1회 설계변경 증액분이 해당 계약금액의 5% 이상 또는 10억원 이상인 경우</p>	<p>서울특별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제7호(신설)</p> <p>7. _____</p> <p>_____ <b>총공사비 50억원 이상 공사 중 1회 설계변경 증액분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 대하여 설계변경 사유 및 기본계획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</b></p>

## □ 검토의견

- 당초, 현재 재무국(계약심사과)에서 의원 발의안과 같이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심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행정의 효율성 측면 등을 고려하여 개정(안)의 필요성은 없는 것으로 검토('13. 5.14, 행정2부 시장 보고) 하였으나
- 도시기반시설본부(토목부)에서 추진중인 「공사중 설계변경 최소화대책 ('13.7.4 시장님보고)」 안에 제시된 “사업계획변경조정위원회(가칭)” 운영 안(사업계획변경의 타당성 여부 등)이 의원발의안과 목적 및 내용이 부합하여 재 검토 한 바,
- 의원발의안을 수용하여 설계변경 이전 단계에서 심의를 통하여 계획, 조사, 설계의 타당성 및 기본계획 변경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 부적정한 설계변경 사전 차단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
  - 다만, 심의의 실효성 확보와 발주부서와 심의기관(기술심사담당관)의 업무량 증가 등을 고려하여 총공사비 50억원이상, 1회 설계변경 증액분이 5억원이상(10%)인 경우로 심의대상 수정 요구
- 우리시 도시기반시설본부 등 발주부서에서도 설계변경 이전 사업 계획변경의 적정여부에 대한 심의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고,
  - 기본적인 계획 또는 공법이 변경되는 경우에 대한 판단이 어렵다는 발의 제안사유에 대하여는 우리시에서 건설기술(설계)심의 운영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중이며( 행정2부시장 방침, '13. 1.25 )

• “기본적인 계획이 변경되거나 공법이 변경되는 경우” 예시

- ① 지상도로 구간이 터널(지하차도), 교량 등으로의 계획변경
- ② 구조물의 기본형식의 변경(예시 거더교 ⇒ 아치교) 등

- 우리시 심의부서 및 발주기관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심의대상을 당초 2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수정의결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수정의결안을 수용하여 시의회에서 의결된 대로 공포 · 시행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

## Ⅳ **향후 계획**

- 2013. 7. 17 : 조례 · 규칙심의회 상정
- 2013. 7. 25 : 조례 · 규칙심의회 개최
- 2013. 8. 1 : 조례개정안 공포

○ 시행일(2014. 2. 2일)

- 부칙 조항 : “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”

- 따로붙임**
- 1) 시의회 수정조문 대비표 1부.
  - 2) 「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회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 공포안 1부.
  - 3) 대형공사 견수 및 심의기관 심의 견수 1부. 끝.

**따로붙임** 1) 시의회 수정조문 대비표 1부.

##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1328
----------	------------

제 안 일 자 : 2013년 7월 3일

제 안 자 : 박태규의원외 13명

### 1. 수정이유

개정안대로 시행할 경우 심의 대상이 너무 많아 현실적으로 업무부담이 과중되는 문제가 있어 심의 대상을 축소 조정함으로써 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임.

### 2. 주요골자

-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을 총공사비 50억원 이상 공사 중 1회 설계변경 증액분이 5억원 이상인 경우로 수정함. (안 제3조제1항제7호)

##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3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7. 건설공사의 설계변경에서 투자심사 재심사 대상을 제외하고 총공사비 50억원 이상 공사 중 1회 설계변경 증액분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 대하여 설계변경 사유 및 기본계획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





## 수정안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서울특별시</p> <p>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제3조(기능)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 의한다.</p> <p>1. ~ 6. (생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&lt;&lt;신설&gt;&gt;</p> <p>7. 그 밖에 시장이 부의 하는 사항</p> <p>② (생략)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서울특별시</p> <p>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제3조(기능) ①</p> <p>----- - -----</p> <p>1. ~ 6. (현행과 같음) 7. <u>건설공사의 설계변경 에서 투자심사 재심사 대상을 제외하고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에 대하여 설계변경 사 유 및 기본계획의 타당 성에 관한 사항</u> 가. <u>2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공사: 1회 설계변경 증액분이 해당 계약금액의 10% 이상 또는 5억원 이상인 경우</u> 나. <u>100억원 이상 공사: 1회 설계변경 증액분이 해당 계약금액의 5% 이상 또는 10억원 이상인 경우</u></p> <p>8</p> <p>-----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서울특별시</p> <p>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제3조(기능) ①</p> <p>----- - -----</p> <p>1. ~ 6. (개정안과 같음) 7</p> <p>-----<u>총공사비</u> <u>50억원 이상 공사 중 1회 설계변경 증액분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 대하여 설계변경 사유 및 기본 계획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</u></p> <p>8</p> <p>-----</p>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p>제6조(소위원회) ① (생략)</p> <p>1. 제3조제1항제1호, 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 : 건설기술심의소위원회</p> <p>2.~ 4. (생략)</p> <p>②~ ⑨ (생략)</p>	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6조(소위원회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----- ----- 제 8 호 ----- -----</p> <p>2.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~ ⑨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부 칙</u></p> <p><u>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</u></p>	<p>②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제6조(소위원회) ①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1.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2.~ 4.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②~ ⑨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(개정안과 같음)</p>

서울특별시조례 제     호

##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 본문 이외의 부분 중 제7호를 제8호로 하고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7. 건설공사의 설계변경에서 투자심사 재심사 대상을 제외하고 총공사비 50억원 이상 공사 중 1회 설계변경 증액분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 대하여 설계변경 사유 및 기본계획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

제6조제1항제1호 중 “제7호”를 “제8호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</p> <p>제3조(기능)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</p> <p>1. ~ 6. (생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&lt;&lt;신설&gt;&gt;</u></p> <p>7. 그 밖에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</p> <p>② (생략)</p> <p>제6조(소위원회) ① (생략)</p> <p>1. 제3조제1항제1호, 제2호 및 제4호부터 <u>제7호</u>까지의 사항 : 건설기술심의소위원회</p> <p>2.~ 4. (생략)</p> <p>②~ ⑨ (생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&lt;&lt;부칙 신설&gt;&gt;</u>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</p> <p>제3조(기능) ①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 <p>1. ~ 6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7. 건설공사의 설계변경에서 투자심사 재심사 대상을 제외하고 총공사비 50억원 이상 공사 중 1회 설계변경 증액분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 대하여 설계변경 사유 및 기본계획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</u></p> <p>8. -----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6조(소위원회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-----</p> <p><u>제8호</u> -----</p> <p>-----</p> <p>2.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~ ⑨ (현행과 같음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부 칙</u></p> <p><u>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</u></p>

**따로붙임** 2) 「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」 일부개정 조례 공포안 1부.

의안번호	제 1328호	심의 의결 사항
의결 년월일	2013. 7. . (제 9회)	

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 
일부개정조례 공포안

제출자	기술심사담당관 최진선
제출년월일	2013. 7. .

법무담당관 심사필

#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

## 1. 의결주문

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## 2. 제안이유

서울특별시의회 제247회 정례회에서 의원발의로 의결되어 우리시로 이송되어 온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「지방자치법」 제26제2항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

## 3. 주요내용

건설공사의 설계변경에서 투자심사 재심사 대상을 제외하고 총공사비 50억원 이상 공사 중 1회 설계변경 증액분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 대하여 설계변경 사유 및 기본계획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 신설(안 제3조제1항제7호)

## 4. 검토의견

- 우리시 도시기반시설본부 등 발주부서에서도 설계변경시 사업계획 변경 적정여부에 대한 심의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고,
- 기본적인 계획 또는 공법이 변경되는 경우에 대한 판단이 어렵다는 발의 제안사유에 대하여는 우리시에서 건설기술(설계)심의 운영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중이며(행정2부시장 방침, '13. 1.25 )
- 우리시의 수정 요청안대로 수정의결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시의회에서 의결된 대로 공포·시행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 본문 이외의 부분 중 제7호를 제8호로 하고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7. 건설공사의 설계변경에서 투자심사 재심사 대상을 제외하고 총공사비 50억원 이상 공사 중 1회 설계변경 증액분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 대하여 설계변경 사유 및 기본계획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

제6조제1항제1호 중 “제7호”를 “제8호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</p> <p>제3조(기능)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</p> <p>1. ~ 6. (생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&lt;&lt;신설&gt;&gt;</u></p> <p>7. 그 밖에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</p> <p>② (생략)</p> <p>제6조(소위원회) ① (생략)</p> <p>1. 제3조제1항제1호, 제2호 및 제4호부터 <u>제7호</u>까지의 사항 : 건설기술심의회소위원회</p> <p>2.~4. (생략)</p> <p>②~⑨ (생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&lt;&lt;부칙 신설&gt;&gt;</u>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</p> <p>제3조(기능) ① ----- -----.</p> <p>1. ~ 6. (현행과 같음)</p> <p>7. <u>건설공사의 설계변경에서 투자심사 재심사 대상을 제외하고 총공사비 50억원 이상 공사 중 1회 설계변경 증액분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 대하여 설계변경 사유 및 기본계획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</u></p> <p>8. -----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6조(소위원회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----- ----- <u>제8호</u> ----- -----</p> <p>2.~4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~⑨ (현행과 같음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부 칙</u></p> <p><u>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</u></p>



**따로붙임 3) 대형공사 건수 및 심의기관 심의 건수 1부. 끝.**

**I. 대상공사 건수** (최근 3년간 설계변경 자료 참조, `11.1~`13. 5월 현재)

- 총 90건, 설계변경 사유는 대부분(80%) 물량 증감 등 단순 변경사항임

(단위 : 건수)

공사규모	1회 설계변경시 증액분(건수)				변경사유		
	계	2억원 이상~5억원 미만	5억원 이상~10억원 미만	10억원 이상	계	계획 변경	단순 변경
계	90	44	14	32	90	15	77(80%)
20억원 이상~50억 미만	42	28	8	6	42	6	36(83%)
50억원 이상~100억 미만	28	16	4	8	28	5	23(80%)
100억원 이상	20		2	18	20	4	16(75%)

※ 총공사비 20억원~100억원 미만공사: 1회 설계변경 증액분이 해당 계약금액의 10% 이상 또는 5억원 이상인 경우

※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 공사 : 1회 설계변경 증액분이 해당 계약금액의 5% 이상 또는 10억원 이상인 경우

**II. 발주기관 및 심의기관(기술심사담당관)의 업무량을 고려한 심의 건수 조정 필요**

- 의원발의안 : 90건(평균 2.5건/월) ⇒ 수정안 : 32건(평균 1.0건/월)

※ 기술심사담당관 심의업무량 (`12~`10년) : 년평균 1,121건(20건/주)

(단위 : 건수)

구분	계		2012년	2011년	2010년	비 고 (소요일수/소요 인원)
	계	년평균				
계	3,364	1,121	1,495	1,021	848	20/(2~3)
기술심의	540	180	150	184	206	20/(2~3)
신기술심의	75	25	23	27	25	20/(1~2)
기술용역타당성심사	1,853	618	950	500	403	3~5/(1)
대형공사장 점검	827	275	346	283	198	2/(1~2)
신기술현장점검	69	23	26	27	16	2/(1~2)

▶ 22명의 기술직 주무관 1명당 1평균 1건/1일 담당(교육시행 등 일반업무 제외)

※ 우리시에서는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소규모 교량 및 복개 구조물 등의 주요 공사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에 가급적 설계심의를 요청토록 하여 심의를 확대시행하고 있음(행정2부시장 방침 제410호, `12.12.28)